

2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22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붙임 1)

- 기본급 : 2022년 최저임금 수준 등 반영
- 호봉산정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참조]

○ 관리운영비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 2021년도 지원 단가에 2.5%수준 인상 적용

붙임 1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간호조무사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	생활지도원		관리인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488	2,192	2,047	2,047	1,965	1,924	1,917	1,917
2호봉	2,588	2,297	2,101	2,101	2,031	1,941	1,930	1,928
3호봉	2,674	2,408	2,190	2,191	2,087	1,978	1,944	1,939
4호봉	2,799	2,512	2,294	2,294	2,157	2,036	1,972	1,970
5호봉	2,892	2,609	2,389	2,389	2,204	2,099	2,016	2,015
6호봉	3,010	2,735	2,481	2,481	2,301	2,164	2,060	2,059
7호봉	3,136	2,845	2,607	2,607	2,393	2,234	2,111	2,099
8호봉	3,295	2,955	2,712	2,712	2,486	2,310	2,198	2,151
9호봉	3,440	3,091	2,828	2,828	2,583	2,396	2,256	2,184
10호봉	3,563	3,214	2,936	2,936	2,673	2,478	2,323	2,249
11호봉	3,683	3,329	3,035	3,035	2,764	2,555	2,411	2,312
12호봉	3,802	3,429	3,125	3,125	2,840	2,616	2,481	2,373
13호봉	3,903	3,517	3,204	3,204	2,914	2,667	2,547	2,437
14호봉	3,986	3,605	3,280	3,280	2,984	2,730	2,593	2,487
15호봉	4,070	3,693	3,353	3,353	3,051	2,789	2,630	2,526
16호봉	4,149	3,771	3,422	3,422	3,115	2,851	2,681	2,570
17호봉	4,223	3,839	3,488	3,488	3,176	2,912	2,731	2,614
18호봉	4,293	3,907	3,552	3,552	3,235	2,971	2,782	2,683
19호봉	4,358	3,968	3,608	3,608	3,289	3,024	2,824	2,735
20호봉	4,417	4,027	3,665	3,665	3,342	3,075	2,865	2,778
21호봉	4,475	4,085	3,717	3,717	3,391	3,121	2,914	2,826
22호봉	4,530	4,138	3,767	3,767	3,438	3,167	2,969	2,882
23호봉	4,582	4,188	3,815	3,815	3,483	3,210	3,027	2,937
24호봉	4,630	4,235	3,858	3,858	3,526	3,252	3,080	2,992
25호봉	4,678	4,282	3,899	3,899	3,567	3,292	3,129	3,046
26호봉	4,717	4,323	3,940	3,940	3,607	3,328	3,172	3,097
27호봉	4,756	4,362	3,975	3,975	3,640	3,360	3,215	3,139
28호봉	4,791	4,397	4,005	4,005	3,670	3,386	3,244	3,171
29호봉	4,817	4,426	4,034	4,034	3,698	3,411	3,276	3,203
30호봉	4,840	4,457	4,060	4,060	3,722	3,435	3,297	3,233
31호봉	-	4,474	4,084	4,084	3,751	3,463	3,331	3,261
촉탁의	기본급 월 2,595천원(동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수당 및 적립금 등)지급 금지)							
직종별 직위	- 과장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생활지도원 직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 (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관리인 : 시설관리인 - 간호조무사('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 :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를 유지.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는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 중 '19년도에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							